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41호 2020. 12. 11.(금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428호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429호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430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하동군 조례 제2431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하동군 조례 제2432호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24
- 하동군 조례 제2433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32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25호 하동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45
- 하동군 규칙 제1226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2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62호 하동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62
- 하동군 훈령 제362호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 폐지규정 68

회 람									
--------	--	--	--	--	--	--	--	--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0-24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69
- 하동군 고시 제2020-243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이임*) 72
- 하동군 고시 제2020-247호 하동군계획시설【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74
- 하동군 고시 제2020-249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하동군청 산림녹지과)..... 76
- 하동군 고시 제2020-250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하동군청 안전총괄과)..... 77
- 하동군 고시 제2020-25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78
- 하동군 고시 제2020-255호 의양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81
- 하동군 고시 제2020-258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화개면장)..... 82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20-149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83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0-1412호 2020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4차) 공고..... 88
- 하동군 공고 제2020-1411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고향의 강(황천강)조성사업-명호교 접속도로] 101
- 하동군 공고 제2020-1433호 하동군 농촌공간 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102
- 하동군 공고 제2020-1440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금성지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해안산책로(보도 및 데크설치)] 109
- 하동군 공고 제2020-1483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110
- 하동군 공고 제2020-1489호 2020년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기간제근로자 단기 채용 120
- 하동군 공고 제2020-1517호 2020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금남지구-1차 외4지구)시행 공고 131
- 하동군 화개면 공고 제2020-36호 읍면 책임제 막바지 텅굴류 제거단(2차) 모집 공고..... 148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28 호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7조제3항에 따라 75만원 이하의”를 “제5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제3조(「하동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를 “관련분야”로 한다.

제4조(「하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피 및 수형이”를 “나무껍질 및 형태(상태)가”로 한다.

제5조(「하동군 포상 조례」의 개정)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순화양양에 솔선 수범”을 “계승발전에 기여”로 한다.

제6조(「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감염병에 걸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7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략)	제8조(과태료 등) ① ----- ----- -----제57조에 따라 ----- -----. ②·③ (현행과 같음)

「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연회비의 면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4. ~ 8. (생략)	제8조(연회비의 면제) ----- ----- ----- -----. 1.·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4. ~ 8. (현행과 같음)

「하동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② (생략) ③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u>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u>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평가단원은 제2조제2호의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④ ~ ⑥ (생략)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관련분야</u> ----- -----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하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뀌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u>수피 및 수형이</u>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 5. (생략) ② (생략)	제15조(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나무껍질 및 형태(상태)</u> 가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 포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2. (생 략) 3. 사회도의회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u>솔선 수범한 경우</u>	제5조(표창장) ----- -----. 1.·2. (현행과 같음) 3. ----- <u>계승발전에 기여</u> -----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제외한다. 1. (생 략) 2. <u>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u> ②·③ (생 략)	제21조(병가) ①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감염병에 걸려</u> ----- ----- ----- ②·③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29 호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5명”을 각각 “2명”으로 한다.

제4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5명”을 각각 “2명”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자한도 및 용자조건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발전소장”을 “하동발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에 따른 결과 보고) ①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용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완료서와 증빙자료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에게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용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제6조 관련)

구 분	융자 한도액	이자율	상환조건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가구 당 2,000만원이내	연 1.5%	7년이내 (3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기업 당 1억원이내	연 1.5%	7년이내 (3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별지 제9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 완료서

1. 주민복지지원사업

사 업 개 요	신 청 자 명	(남 / 여)		
	사 업 장 소			
	용 도 (사 업 명)			
	사 업 수 입 기 간			
자금용자승인일		대 출 은 행		
대 출 금				
대 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용자금 집행 내역

연번	사용내역	수량 (건,명)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붙임 : 인건비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물품구매내역 영수증 등 증빙서류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조례」 제 17조에 따라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명 : (서명·날인)

하동군수 귀하

가 인정하는 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

제6조(용자한도 및 용자조건) 용자한도 및 용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출한도액	대출 이자율	상환조건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1가구 당 1,000만원이내	연 2%	7년 이내 (3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기업 당 5,000만원이내	연 2%	7년 이내 (3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제7조(용자절차) ① (생략)

② 군수는 용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용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용자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신 설>

-----2명

제6조(용자한도 및 용자조건) 용자한도 및 용자조건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으로 이동>

구 분	대출한도액	대출 이자율	상환조건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1가구 당 2,000만원이내	연 1.5%	7년 이내 (3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기업 당 1억원이내	연 1.5%	7년 이내 (3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제7조(용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하동발전본부
장-----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①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용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완료서와 증빙자료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

<신 설>

다. 이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에게 이행촉구, 시정 요구, 경고 또는 용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서에 따른 결과

보고) ①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용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 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 완료서와 증빙자료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에게 이행촉구, 시정 요구, 경고 또는 용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30 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차입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 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 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3.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② (생 략)</p>	<p>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 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 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p> <p>5. 차입금</p> <p>②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31 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구역의 경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 중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지원하는 시설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공익 목적을 위하는 활동을 할 경우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공익 목적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 3.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공동이용시설의 이용) ①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용료(제3조의4 관련)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게스트하우스	4명/1일	1)주중	40,000	※ 기준 초과시 : 추가 10,000원/1명
		2)주말	60,000	
광평 나눔채	4명/1일	1)주중	90,000	※ 기준 초과시 : 추가 15,000원/1명 ※ 마을회관 등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재생사업구역 내 공공사업으로 인해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3개월 이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무상 이용시 각종 제세공과금 거주자 부담
		2)주말	110,000	
튜터센터	2시간	10,000		※ 기준 초과시 : 추가 5,000원/1시간
	1일	40,000		
꿈그린터	2시간	5,000		※ 기준 초과시 : 추가 2,500원/1시간

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나.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한다.

다. 숙박시설의 입실시간은 14시, 퇴실시간은 익일 12시로 한다.

1) 월요일~목요일
2)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별표 2】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제3조의4 관련)

구 분	반환기준	비고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 5. (생 략)</p> <p>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p> <p><신 설></p>	<p>제3조(공동이용시설) ----- ----- ----- <u>제3조제6호</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구역의 경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u></p> <p>7. <u>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 중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지원하는 시설</u></p>
<p>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② (생 략)</p> <p>③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시설이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u>다음</u>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p> <p>1.·2. (생 략)</p> <p><신 설></p>	<p>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 --- <u>공익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 다음</u> ----- -----.</p> <p>1.·2.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의 공익 목적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p>

④ ~ ⑥ (생 략)

<신 설>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 3.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3조의4(공동이용시설의 이용)

- ①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 2.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32 호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육성, 마을만들기 등)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성의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

제6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역 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2.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3.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대상으로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하동군 농·어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농·어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 농·어촌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문·심의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하동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예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별 관련사항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건설교통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지역 읍·면장
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운영)위원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하동군의회 의원
2. 마을만들기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담

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하동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으로 하동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3.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만들기 인재 발굴·육성
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17조(운영·관리 위탁)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 2. 위탁기간
- 3.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 4.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관리비 등 지원) ①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단,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 2.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지원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9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이용료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반환



제20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33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소산업”이란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업

나. 수소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업

다.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업 등

제3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한다.”

제3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제목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제9조의4부터 제9조의6까지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구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하동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도 출연금의 상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 9. 30.까지로 한다.

제9조의3(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6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② 기금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

제9조의4(중전의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중전의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4(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산업용지 구입 및 임대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의5(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의6(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준용하고”를 “따르고”로,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고, 제29조부터 제29조의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군수는 대송산업단지 내에 하동군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 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투자기업은 제24조에 따른 전략산업투자기업에 한하며, 20명 이상 상시고용 인

원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공유재산의 임대특례) 대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료의 요율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인 수소제품 및 제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을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수소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2.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③ 토지매입 및 공장시설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한차례에 한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과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수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수소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으로 한다.

제32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7조(중전의 제34조)제1항 중 “다른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대한 사항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수소산업”이란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u> <u>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업</u> <u>나. 수소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업</u> <u>다.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업 등</u></p>
<p>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u>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생 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p>	<p>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u>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서 삭제></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현 행	개 정 안
<p>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4. (생략)</p> <p>⑤ ~ ⑦ (생략)</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p>5. (생략)</p> <p>제3장 도 투자유치진흥기금</p> <p>제9조(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 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 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 의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 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 여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 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 담해야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 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군 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p> <p><신설></p>	<p>-----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3장 투자유치진흥기금</p> <p>제9조(투자유치진흥기금)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등 에 관한 조례」----- ----- ----- -----.</p> <p>제9조의2(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 구성) ① 군수는 「지방자치</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하동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군의 출연금</u> <u>2. 도 출연금의 상환금</u> <u>3. 기금의 운용수익금</u> <u>4. 그 밖의 수입금</u> <p><u>③ 기금의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 9. 30.까지로 한다.</u></p> <p><u>제9조의3(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u> <u>2. 제9조의6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u> <u>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u>

현행	개정안
<p><u>제9조의2(기금의 용도)</u></p>	<p><u>② 기금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u></p> <p><u>제9조의4(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u> <u>2. 산업용지 구입 및 임대</u> <u>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p><u>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u></p>
<p><u>제9조의3(기금의 관리·운영)</u></p>	<p><u>제9조의5(기금의 관리·운영) ①</u> <u>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u></p> <p><u>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u></p> <p><u>③ 기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u></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4(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u>결산</u>)</p> <p>제2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를 <u>준용하고</u>,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u>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u>」를 <u>준용한다</u>.</p> <p><신 설></p>	<p><u>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u></p> <p>제9조의6(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u>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2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 ----- ----- ----- ----- 따르 고----- ----- -----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p> <p>제29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u>군수는 대송산업단지 내에 하동군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u></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68 1010 437 1055"><신 설></p> <p data-bbox="421 1547 609 1592">제6장 보칙</p> <p data-bbox="268 1682 437 1727"><신 설></p>	<p data-bbox="866 271 1404 584">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 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 할 수 있다.</p> <p data-bbox="866 607 1404 987">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 받거나 매입 할 수 있는 투자기업은 제24조에 따른 전략산업투자기업에 한 하며, 20명 이상 상시고용 인원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p> <p data-bbox="831 1010 1404 1525">제29조의2(공유재산의 임대특례) 대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료의 요율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 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 data-bbox="927 1547 1378 1659">제6장 수소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p> <p data-bbox="831 1682 1404 1727">제30조(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p> <p data-bbox="866 1749 1404 2119">① 군수는 군의 미래 성장전략 산업인 수소제품 및 제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을 군 내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수소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2.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p>③ 토지매입 및 공장시설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한차례에 한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31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수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수소 소재 및 복합재</p>

현행	개정안
<p><u>제29조 ~ 제33조</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u>제34조</u>(준용) ① 국내기업의 투자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p>② (생략)</p> <p><u>제35조</u> (생략)</p>	<p><u>제32조 ~ 제36조</u> (현행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보칙</u></p> <p><u>제37조</u>(준용) ① ----- -- 대한 사항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38조</u> (현행 제35조와 같음)</p>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25 호

하동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견제출) ① 의견진술인은 의견 제출기간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의견진

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견진술서를 받으면 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교통·감사·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
3.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추천자
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

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첨부서류(제2조제2호 관련)

구 분	주요 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나 관여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시진료사실확인서(병원방문시) 등
	○ 국가 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사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등
	○ 택배 및 화물 등 물품 승하차(생계형차량) ※ 단, 20분 이내 허용	거래장(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입증서류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주차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노점상 단속, 현금수송 등)	관련기관 공문서
	○ 취재차량	협조공문서, 기자증 사본 보도내용 사본 등
	○ 행사지원 ※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	행사관련 공문 출장명령서 사본
○ 고장·사고 차량	차량정비내역서, 견인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등	

*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26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기금용자 대상 등) ① 조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 1. 용자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갈사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에 한하여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 2. 용자대상 업종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 3. 용자한도는 공장시설 등 부지 매입금액의 60퍼센트 이내에서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4.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부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 등 부지 매입을 위하여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계

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② 기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도의 기업의 본점등 이전보조금)”을“(도의 기업의 본점 등 이전보조금)”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입주기업의 요청 시 입지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중 “제29조”를 “제32조”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31조제3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제1항”을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제32조제1항”을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를 “제36조”로 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9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하며,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소산업의 해당여부를 수소관련 전문가 단체·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0조제3항의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별표 2와 같고, 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시 기업이 투자한 토지구입비 인정액은 토지구입비 이외의 투자인정액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소산업 투자 규모별 보조금 지원한도(제29조 관련)

투자규모 (투자인정액-10억)	지 원 한 도
25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 100억원 이하
15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기금융자 대상 등) ① 조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융자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갈사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에 한하여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이면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u> <u>2. 융자대상 업종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u> <u>3. 융자한도는 공장시설 등 부지 매입금액의 60퍼센트 이내에서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u> <u>4.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u> <p><u>② 제1항에 따른 공장부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기 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u></p> <p><u>③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 등 부지 매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u></p>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의2(기금의 용도)</u></p>	<p><u>서식의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5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①</u> <u>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u></p> <p><u>② 기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u></p> <p><u><삭 제></u></p>
<p><u>제5조의3(기금의 관리·운용)</u></p> <p><u>제16조(도외 기업의 본점등 이전 보조금) ①·② (생 략)</u></p> <p><u>제17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 ③ (생 략)</u></p> <p><u>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u></p> <p><u><단서 신설></u></p>	<p><u>제16조(도외 기업의 본점 등 이전 보조금) ①·② (현행과 같음)</u></p> <p><u>제17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u></p> <p><u>④ -----</u></p> <p>-----</p> <p>-----</p> <p>-----</p> <p>-----</p> <p>-----</p> <p>----. <u>단, 입주기업의 요청 시 입지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시설</u></p>

현 행	개 정 안
<p>⑤ (생 략) 제21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u>보조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u>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 <u>제32조</u>----- ----- -----.</p>
<p>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생 략) ③ 조례 제31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p>	<p>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34조제3항</u>----- ----- ----- -----.</p>
<p>제2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2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 <u>제35조제1항</u>----- ----- -----.</p>
<p>1. ~ 6. (생 략) ② ~ ⑥ (생 략)</p>	<p>1.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27조(융자금의 상환) ①·② (생 략) ③ 조례 제32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조기상환명령</p>	<p>제27조(융자금의 상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35조제1항</u>----- -----</p>

현 행	개 정 안
<p>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사유 발생일부터 같은 조건의 기업자금 평균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더한다.</p>	<p>----- ----- ----- ----- -----.</p>
<p>④ (생략)</p> <p>제28조(투자유치 성공 포상 등)</p> <p>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8조(투자유치 성공 포상 등)</p> <p>① --- 제36조----- ----- -----.</p>
<p>1.·2. (생략)</p> <p>② ~ ④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29조(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p> <p>①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소산업의 해당여부를 수소관련 전문가 단체·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u></p> <p>② <u>조례 제30조제3항의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별표 2와 같고, 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시 기업이 투자한 토지구입비 인정액은 토지구입비 이외의 투자인정액 합계를 초과</u></p>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p>	<p>할 수 없다.</p> <p>③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0조(준용) ----- -----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p>

「하동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62 호

하동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야외운동기구”란 군수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 ②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문화체육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가 공원, 산림녹지과에서 조성 및 관리하는 소공원, 산(등산로 포함)등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는 산림녹지과장, 그 외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장이 관리주체가 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산로 등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등) ① 관리주체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완료 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안내)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자체 보수가 어려운 부분은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안내표지(제9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별지 서식]

(앞면)

야외 운동기구 관리카드 (제8조 관련)

관리번호					
위 치	(시설명 : 000 공원, 00 학교)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설치일자	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기 구 명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뒷면)

야외 운동기구 관리카드 (제8조 관련)

관리현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63 호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 폐지규정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2020 - 242호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6.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166-21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0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342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626 1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1.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물번호 부여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 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49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166-21	2020 1116		2009 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747-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811	2020 1116		2009 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405-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 로 754-43	2020 1116		2009 0702	동학전적지인 고성산 지 남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52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966-7	2020 1116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599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석길 17	2020 1116		2007 0618	고석이라는 자연마을이 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17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길 25-14	2020 1116		2007 0618	관곡천에 관모양의 바위 가 있어 붙여진 자연마 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220-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50	2020 1116		2008 0402	넓고 비옥한 평야를 상 징한다 하여 붙여진 자 연마을명에 지역특성을 합성하여 북방우회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395-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상덕길 46-85	2020 1116		2007 0618	상덕이라는 자연마을이 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일길 7-102	2020 1116		2007 0618	양일이라는 자연마을이 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산 4-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수길 86	2020 1116		2008 0402	옥산의 물이 맑게 흐르 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 건물번호 분할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 동 사 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34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340	2020 1116		2007 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34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342	2011 0729		2007 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 건물번호 폐지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626	202011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별지 제3호 서식]

(전 면)

(하동군 고시 제2020 - 243호)

개 간 사 업 시 행 계 획 승 인 서

사 업 시 행 자	성 명	이 임 *		생년월일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개 간 장 소	군	면		리	
	하동	악양		신성	
개 간 의 용 도	농지조성(밭작물재배)				
승 인 면 적	지 번	지 목	지 적	※ 토지	
	산27-6	임야	2,055㎡	대가	
지 정 착 수 시 기	2020. 11.				
공 사 비 예 정 액	14,687천원				
승 인 조 건	개간사업 시행인가조건 18항을 부함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2020년 11월 16일

하 동 군



비 고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후 면)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개간승인면적	토 지 대 가				비고
군	면	리	지번				m ² 당	금액	주 소	성명	
하동	악양	신성	산27-6	임야	2,055m ²	1,398m ²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을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하동군 고시 제2020-247호

하동군계획시설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하동군 읍내리 174-3번지 일원 하동 군 계획시설사업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 11. 24.


하 동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74-3 ~ 하동읍 읍내리 190-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하동군 계획시설사업
 - 명 칭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239m, B=1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하동군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준공 기간 변경)
 - 착 수 : 기존 - 2020. 7. 31. (변경없음)
 - 준 공 : 기존 - 2020. 12. 03. (변경)
 - 준 공 : 변경 - 2021. 03. 31.
 - (사유 -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기간 연장)
6. 관계도면 : 실음 생략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8. 관계도서는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055-880-2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번호	위 치			지 적(m ²)		지장물	소 유 자
	읍 면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총지적	편입면적		
1	하동읍 읍내리	174-7 (174-3)	답	1,154	282	1식	하동군
2	하동읍 읍내리	187-4 (187-3)	답	2,020	539	1식	하동군
6	하동읍 읍내리	188-3 (188-1)	답	2,453	136	1식	하동군
9	하동읍 읍내리	188-4 (188-2)	답	1,540	351	1식	하동군
10	하동읍 읍내리	190-4 (190-2)	답	836	185	1식	이*희
11	하동읍 읍내리	190-5 (190-3)	답	1,190	267	1식	하동군 지분 1/2
12	하동읍 읍내리	190-5 (190-3)	답	1,190	267	1식	박*철 지분 1/2
13	하동읍 읍내리	191-3 (191-1)	답	2,010	517	1식	하동군
14	하동읍 읍내리	194-5 (194-2)	답	2,521	617	1식	하동군

<p>■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6. 30.></p>			
<h2>하천점용 허가증</h2>			
제2020-249호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성명(법인명)	하동군수(산림복지과 산림보호담당)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614-83-00025		
하천명칭	덕천강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1008-21번지		
점용면적	1320㎡		
최초허가일	2020-11-25		
점용기간	2020년 11월 16일부터 ~ 2025년 11월 15일까지(5년간)		
허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 중급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지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p>「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p>			
<p>하 동 군 수 [인]</p> 			
<p>2020년 11월 25일</p>			
<p>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p>■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6. 30.></p>			
<h2>하천점용 허가증</h2>			
<p>제2020-250호</p>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성명(법인명)	하동군수(안전총괄과 통신관제담당)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614-83-00025		
하천명칭	횡천강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905번지		
점용면적	1㎡		
최초허가일	2020-11-25		
점용기간	2020년 11월 1일부터 ~ 2025년 10월 31일까지(5년간)		
허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여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지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p>「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p>			
<p>하 동 군 수 [인]</p> 			
<p>2020년 11월 25일</p>			
<p>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하동군 고시 제2020 - 254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3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434-17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9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76 외 2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1.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물번호 부여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 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288-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434-17	2020 1130		2007 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 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 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 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321-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188-8	2020 1130		2007 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 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 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 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333-1, 333-5, 333-7, 1045-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02	2020 1130		2007 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 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 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31-3, 31-4, 31-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807	2020 1130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 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16-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 길 72-9	2020 1130		2007 0618	진교의 연원(淵源)을 적용한 민다리길 안쪽에 위치한 길 이라 하여 민다리안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85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길 90	2020 1130		2008 0402	뒷산이 병풍처럼 싸여져 있고 앞 냇물이 휘어 들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19-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 길 7-65	2020 1130		2008 0402	넓고 비옥한 평야를 상징한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지역특성을 합성하여 북방우 회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707-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대비 길 49	2020 1130		2009 0302	정금과서 대비로 이어지는 도 로로서 행정리명의 명칭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98-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73-10	2020 1130		2008 0402	제면당이라는 지명 반영	

□ 건물번호 폐지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348-2	20201130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78	20201130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76	20201130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하동군 고시 제2020-255호

『의양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하동군 『의양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1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의양마을 만들기 사업

2. 사업의 목적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지역 특성을 골고루 잘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역동적인 지역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함

3. 사 업 비 : 금500,000천원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일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즐거운 마을회관, 어울림 쉼터 조성 등)
 - 지역경관개선(마을화합연계길 등)
 - 지역역량강화(주민교육 등)

5. 자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500	270	230	
국 비	189	189	-	
도 비	24	24	-	
군 비	287	57	230	

6.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7. 사업시행 기간 : 2019년 ~ 2021년(3개년)

8. 기타사항

- 주요 사업내용, 세부 설계도서 등은 담당부서(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 T.055.880.2548)에 비치하며, 일반인 열람 가능

<p>■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6. 30.></p> <h2 style="text-align: center;">하천점용 허가증</h2> <p>제2020-258호</p>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6		
성명(법인명)	화개면장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614-83-00141		
하천명칭	화개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하동군 화개면 탑리 851		
점용면적	L=105m		
최초허가일	2020-12-03		
점용기간	2020년 12월 3일부터 ~ (영구)		
허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대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정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지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p>「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하 동 군 수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12월 03일</p>			
<p>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하동군 공고 제2020 - 149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제안 이유 : 당직근무자 간 형평성 제고와 현실에 맞는 당직 운영을 위함.
3. 주요 내용
 - ‘당직근무자의 편성기준’ 일·숙직 조정(안 제6조 관련 별표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63, FAX 880-2159, rosell99@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1]

기관별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제6조제2항관련)

기 관 별	숙 직	일 직
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직사령 : 당직반장 대행 ○ 숙직반장 : 6급 담당 1명 ※<u>주무담당주사는 숙직제외</u> ○ 숙직반원 : 직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직사령 : 5급 또는 주무 담당주사 1명 ○ 일직반원 : <u>직원 3명</u> (<u>운전원 포함</u>)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직(재택)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직 1명

<개정안>

[별표1]

기관별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제6조제2항관련)

기 관 별	숙 직	일 직
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직사령 : 당직반장 대행 ○ 숙직반장 : 6급 담당 1명 ○ 숙직반원 : 직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직사령 : 5급 또는 주무 담당주사 1명 ○ 일직반원 : 직원 2명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직(재택)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직 1명

하동군 공고 제2020-1412호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공고(4차)

경유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4차)」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차량소유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하 동 군 수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년 11월 13일(금) ~ 11월 20일(금)까지
- 사업물량 : 117백만원(약 33대)
 - ※ 부착 되는 장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지원 대수에 변동 있을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기준
 1. 차량 정기검사 잔여일수가 짧은 차량
 2.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차량연식(제작일자 기준) 최신 차량
 4. 차량연식이 동일할 경우 배기량이 큰 차량
 - ※ 민간>공공 순으로 지원하며,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우선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하동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1833-7435) 안내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는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최소 2년간 의무사용,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회수기준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등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 2020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자
- 차량소유자당 1대의 차량만 지원 가능

○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 중형장치 부착대상에 대형장치를 부착한 경우와 대형장치 부착대상에 중형 장치를 부착한 경우 중형장치 보조금을 지원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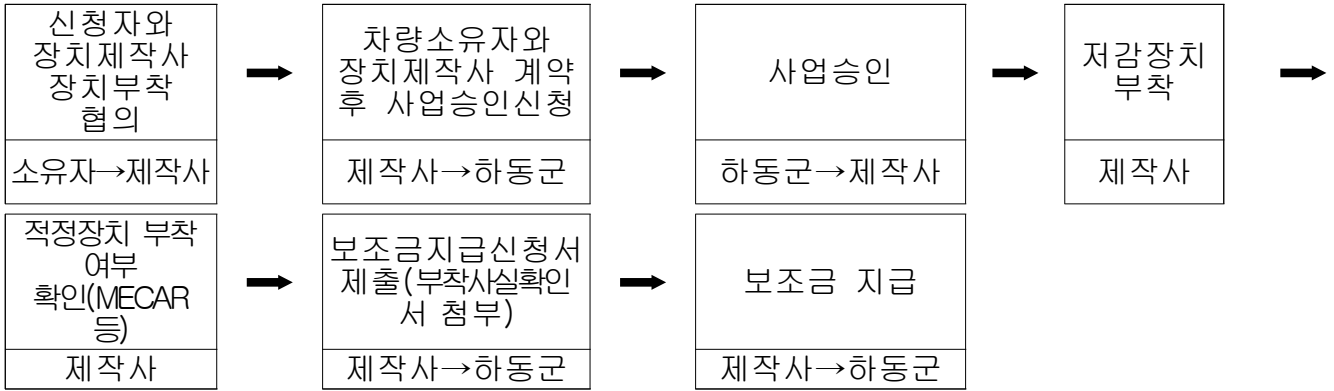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사업절차 및 방식



○ 신청방법

- 제작사로 본인 직접 부착 문의 및 신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부착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이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에서 하동군으로 사업신청
→ 장치부착 신청과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 신청시 구비서류

-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사업참여 신청서 1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차량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종합검사결과표(정밀검사 불합격 해당자에 한함) 1부

○ 보조금 청구기간 : 2020. 12. 15. 이내 청구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저감장치 제작 지연 등의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장치제작사) 각 1부
-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협회작성) 1부
- 청렴이행서약서 (신청자 및 제작사) 각 1부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작사 법인인감증명 포함) 각 1부
- 자부담 납부 증빙 서류 1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장치 보증기간 내 매년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에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자부담하여야 함
-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검토결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제외 대상임

□ 기타문의

- 하동군 환경보호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담당(☎055-880-2564, 2566 ,2567)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비 고
1	(주)세라컴	02-744-1777	
2	(주)에코닉스	1666-3243	
3	HK-MnS(주)	1588-7657	
4	일진복합소재	1588-7558	
5	(주)크린어스	1544-1198	
6	(주)이앤드디	1644-2402	
7	화이버텍	031-942-9008	

- 붙임 1.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신청서
 2. 매연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3. 보조금 지급 청구서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5. 위임장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청렴이행서약서

[붙임1]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차량정보	차명		차량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배기량	cc	총중량	kg
	최초등록일		연식(제작연도)	

2020년 하동군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하동군수 귀하

[붙임2]

매연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2020년 하동군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차량 소유자 유의사항을 직접 작성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상차량 현황

차 량 번 호		소유자		저소득 해당 여부	유□, 무□
차량 총중량	kg	연 식		저속운행 여부	유□, 무□
원동기 형식		장치종류		보조금	만원
장 치 명		장치효율	%		

차량소유자 유의사항 - 내용 숙지 후 ()안은 자필로 작성

- 지원받는 상기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합니다.
- 장치부착(개조) 후 의무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반납 시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 회수
- 수출·폐차 등 차량 말소 시에는 (장치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 부착 및 개조와 관련한 보증(A/S)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장치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 부착(개조)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만 가능하며, 초과 시 자동 취소됩니다.
- 상기 신청차량은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한 차량)으로 부착 후 (3년 이상) 운행 가능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 원본은 하동군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사본은 장치 제작사, 차량소유자가 1부씩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장치 제작사>	<차량 소유자>
업체명 :	차량번호 :
소재지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연 락 처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붙임3]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DPF			P-DPF		저공해(LPG) 엔진개조	PM·NOx 저감	
	장치구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소형, 복합중형 (RV,승합,화물 구분)			소형 (저감효율 70%이상·미만구분)		RV, 승합, 화물	자연재생, 복합재생	
	사업량									
	사업비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원동 기 형식	차량 총중량	배기량	장치 종류	장치 형식 (제조사)	
	합계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붙임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장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cc		출 력	ps		주행거리	km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 / 1,000km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4)장치종류		제품(일련) 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퍼센트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2020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회사 대표자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1 ¹⁾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계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노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 2 ²⁾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
- 3 ³⁾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동시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 4 ⁴⁾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제2종(p-DPF)의 경우 중형, 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동시저감은 일체형, 분리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붙임5]

위 임 장	
차 량 의 표 시	차량등록번호 : 차 명 : 저감장치종류 :
구조변경일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하동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차량 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p style="text-align: center;">대리인 : (장치제작사)</p> <p style="text-align: right;">인</p> <p style="text-align: center;">주소 : 장치제작사 주소</p> <p>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하동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차량 운행사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차 량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인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 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예관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 하동군수 귀중

[붙임7]

(신청자 및 제작사 각 1부)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하동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

성 명

(서명)

◎ 하동군 공고 제2020 - 1411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하여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하 동 군 수

도로의 종류	군도	노선명	8호선 (남산~명호)
공사의 종류	고향의 강(황천강) 조성사업 - 명호교 접속도로		
사업시행자	하동군수(안전총괄과장)		
구 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86-11번지 ~ 명호리 142-2번지(L=35m)		
공사시행장소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일원		
공사시행기간	허가일로부터 ~ 2022년 9월 31일		
착수예정일	2020년 11월 일	준공예정일	2022년 9월 31일
공사의 목적 및 사유	고향의 강(황천강) 조성사업 관련 명호교 재가설공사로 인한 접속도로 개설		

하동군 공고 제2020 - 1433호

「하동군 농촌공간 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하동군 농촌공간 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48조)」에 의거 참여 업체별 제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1. 모집기간 : 2020. 11. 23.(월) 09:00 ~ 2020. 12. 1.(화) 18:00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인원)
 -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 후 참여업체 추천에 의해 최종 9명(예비 후보 2명 포함) 선정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분야 : 농촌계획, 지역(농촌)개발, 농촌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5. 자격요건
 -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해당분야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제외대상

-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할 경우
- 그 밖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서 접수 후 제안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1. 23.(월) 09:00 ~ 2020. 12. 1.(화) 18:00
- 접 수 처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계☎ 055-880-2516
- 접수방법 : 공문(비공개), E-mail, 우편(등기) / (방문접수 불가)
 - 주 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우편번호) 52353
 - E-mail : h9004231@korea.kr
- ※ E-mail 및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 유무 확인☎ 055-880-2516)을 부탁
드리며, 우편(등기)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8.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별지 1호】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동의 및 보안각서 1부【별지 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3호】
-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평가위원 선정

- 일 시 : 2020. 12. 4(금) 예정
- 선정인원 : 7명(예비위원 2명 별도)
- 선정방법
 - (1)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업체별 7명 추천
 - (2) ①다빈도 ②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③예비후보 2명
- 선정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만 유선으로 개별 통보
- ※ 단, 연락 불능, 불참 의사시 차순위자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 일 시 : 2020. 12. 10.(목) 14:00 ~

○ 장 소 : 하동군청 본관 2층 소회의실

※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안평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11.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안서 평가일(2020. 12. 10.(목) 14:00)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면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참석자에게는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안은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지역개발(055-880-2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보안각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서 1부.

등록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인적사항 ~ 3. 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

- 직급기재는 공무원인 경우 해당직렬 까지 작성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협회 등은 등급으로 기재
- 연구기관은 연구원, 학계는 정교수 등으로 기재

4. 학력사항은 대학교 이상의 최종학력만 기재

-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
-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

단,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

5. 경력사항은 최종학교 졸업이후 평가대상 분야에서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기재

6.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7. 주요저서 및 논문은 최근 5년간 발표한 내용을 기재

8. 평가위원 활동경력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평가·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기재

9. 기타 관련분야 등 위원 선정에 필요한 자료 첨부(임의)

※ 상기 각 사항에 대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별지2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동의 및 보안서약서

본인은 「하동군 농촌공간 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으로 등록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으며, 본인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사실 및 본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게 평가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0. 11. .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3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하동군 농촌공간 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하동군은 『하동군 농촌공간 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접수 및 예비평가위원 작성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력·자격사항, 주소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이메일 등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하동군 농촌공간 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선정 및 자격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완료일까지 이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하동군 농촌공간 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0년 11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하동군 공고 제2020 - 1440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하여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도로의 종류	군도	노선명	6호선 (노량~신방)
공사의 종류	금성지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 해안산책로(보도 및 테크설치)		
사업시행자	하동군수(해양수산과장)		
구 간	1구간 :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682-2번지 ~ 675-4번지(L=488m) 2구간 :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817-3번지 ~ 682-42번지(L=912m) 3구간 :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675-8번지 ~ 산15-13번지(L=253m)		
공사시행장소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일원		
공사시행기간	허가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착수예정일	2020년 11월 일	준공예정일	2021년 12월 31일
공사의 목적 및 사유	금성지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관련 해안산책로 설치(보도 및 테크설치)		

하동군 공고 제2020-1483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1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인력(기간제근로자)을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하 동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자격요건	인원	근무기간	주요업무
하동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간호사	2명	2021. 1. 1. ~ 2021. 12. 3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혈압·혈당 측정 및 만성질환자 상담)

※계약기간은 1년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 1)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응시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 관련학과 전공자 중 해당 면허증(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3)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4)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자로 운전 가능자
- 5)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 6) 기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자

3. 전형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근무조건

근무장소	업무분야	근무시간	인건비	비고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하동군보건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주 5일 (월~금) 09:00~18:00	2021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020.12.1(화)~11(금)	• 하동군청 홈페이지 게재
접수기간	2020.12.1(화)~11(금)	• 하동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 직접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장소 공고	2020.12.14(월)	•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0.12.15(화)	
최종합격 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2020.12.16(수)	• 자격증, 경력사항, 결격사유 조회
최종 합격자 발표	2020.12.17(목)	•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방법

- 응시원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하동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양식 임의변경 금지)

나. 응시원서 접수

- 1) 접수기간 : 2020.12.1.(화)~12.11.(금)
- 2) 접 수 처 : 하동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담당(☎055-880-6644)
-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접수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하동군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4cm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나. 이력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사진부착)

- 학력, 경력(해당자에 한함)을 최근 순으로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사진부착, A4용지 1매 이내)

라. 면허증(간호사·치위생사) 사본 1부

마.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남자일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아. 신원진술서 2부

자. 자격요건확인을 위한 동의서 1부

차. 건강진단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해 채용일 전까지)

8.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결격사유에 의한 불합격으로 판명될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라. 접수한 서류는 반환 요구 시 반환 가능함
- 마.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보건소 건강증진부서(☎880-66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가. 접수 마감 후 모집분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선발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나.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앞면]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1년도 하동군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12 월 일 성명 (인)

응시번호	※	응시분야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간호사)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 · 수료 · 재학
면허 및 자격	면허증	<input type="checkbox"/> 간호사면허증 (면허번호 :)		
	기타 자격증(전산등)			
경 력	근 무 기 관		근 무 기 간	담 당 업 무 (세부적으로기록)

하동군수 귀하

응 시 표

응시번호	※	응시분야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간호사)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이름		소지자격증		
주민등록번호	~			
2020년 12월		일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수 귀하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가.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나. 학 력 :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 다. 경 력 : 해당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라. 이 름 : 정자로 기재합니다.
- 마.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바.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 사.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양식)

이 력 서

사 진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영 문	
	주 소				

학 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자 격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양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렬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간호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이해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에 대해 아는 대로 간략히 쓰시오)

응시취지 및 향후계획

(응시하게 된 배경과 향후 활동계획을 적으시오)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술하시오
- 별지 이용가능)

2020. . .

작성자

(인/서명)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간단히 기술하되,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양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주 소 :

본인은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2021년 보건소(건강증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하동군이 실시하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통신이용,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확인서 및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0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며 하동군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0-1489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3차)

2020년 12월 03일

하 동 군 수

1 모집 내역

가. 모집인원 : 10명

분 야	채용인원	사업내용	근무기간	적용지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0명	○산림병해충 예찰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20.12월	2020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종합 지침 적용 2020년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

나. 근무부서 : 하동군청 (산림녹지과)

다. 근무기간 (예정) : 2020년 12월(약15일간)

☞ 관리청의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근무 내용

구 분	근무 내용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발생조사(QR코드 및 시료채취) ○ 산림병해충 방제작업(훈증·파쇄·소각 등), 훈증더미 수집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 기타 산림사업 추진 및 지원

3 신청 및 선발

가. 신청서류

- 1) 사업참여 신청서 1부(붙임 1)
- 2) 표준근로계약서 1부(붙임 2)
- 3)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4) 구직신청서 1부(붙임3)
- 5)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대상자에 한함)
- 6) 취업취약계층 해당 시 증빙서류 1부.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나. 구성 및 업무

- 1. 1개단 4명으로 하며, 작업 여건에 따른 3~5명 구성 가능
- 2. 각 예찰·방제단을 총괄할 단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
 - 1) 산림공무원, 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산림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3) 산림분야 종사 경력이 있는 자로 예찰·방제단을 총괄할 소양을 갖춘 자
 - 4) 모든 단원에게는 각각 별채요원, 예찰조사요원, 장비관리요원, 방제요원 등의 고유임무를 부여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른 단원의 임무도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임무를 부여

나. 접수일시 : 2020년 12월 03일(목) ~ 12월 08(화), 09:00~18:00

※ 공고기간 : 2020년 12월 03일 ~ 2020년 12월 08일

※ 모집(선발)인원 부족 시 또는 작업자 결원 시 수시모집 및 차순위자 선발

다. 접수장소 : 하동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라. 면접일 : 2020년 12월 10일 (세부시간·장소-추후 통보)

※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달 등에 따라 면접심사 생략 가능

마. 선발자 확정 발표 : 2020년 12월 11일(개별유선 및 문자통보)

4 신 청 자 격

-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되어있어야 함
- 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자
- 다. 취업취약계층(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포함),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휴업자, 무급휴직자의 경우 신청대상 범위에 배우자 포함

5 신 청 자 격 의 제 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가.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 해당되는 자

- 나. 산림사업장 작업여건에 부적합한 장애우

⇒ 자격제한자임에도 사업 참여하여 사후 확인된 경우 중도탈락 처리

- 다. 사업참여 시 건강유지에 지장이 우려되는 자

- 라.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고교·대학 재학생

- 마. 『2020년 재정지원일자리지침』 적용 직종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중복참여(동일기간에 2개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2) 반복참여(일자리사업을 3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참여) 제한

① 2년 연속근무 및 3년(2018년~2020년) 이내 2회 참여한 경우 지원불가

② 참여 제한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참여가능

③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만 제한기간 도과 후 참여가능

④ 지침에 따른 반복참여 가능자 제한대상 제외

3) 실업급여 수급 후 참여불가

※ 실업급여 수급한 뒤 다시 참여하려고 할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반드시 거쳐야 함

- 4)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②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은 참여 제한

6

선 발 기 준

가. 1차 서류심사 : 2020. 12. 09.(수)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시험 일자 통보 : 2020. 12. 09.(수)

※ 개별 휴대전화 문자 통보(단, 불합격자는 별도의 통보 없음)

나. 2차 면접심사 : 2020. 12. 10.(목)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능보유, 인성 및 업무 적격성 검정
- 면접심사 세부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지

※ 접수결과 미달 등에 따라 면접심사 생략 가능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2. 11.(금) 개별유선통지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처리함.

※ 개별 유선 통보(단, 불합격자는 별도의 통보 없음)

라.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

- 선발 배점 기준
 - 서류(경력, 자격증, 부양가족) 40%
 - 면접(직무수행태도, 의사표현 능력, 전문성, 건강상태, 성실성) 60%

※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우선 선발할 수 있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처리

- 선발 배점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7 임금 및 근로조건

가. 급여사항

구 분	임 금 (일 급)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 반원 : 68,720원
※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본인명의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기타 임금에 관한 사항은 사역대상자 결정 후 근로조건에 의함.	

나. 근로조건

- 1) 1일 8시간(09:00~18:00), 주5일(40시간) 근무 원칙
 -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2) 휴 일
 - 1주일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주휴일) 부여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부여

8 기타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관계공무원 또는 책임자의 정당한 작업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무자는 30일 전에 예고 후 해고할 수 있음

다. 사업 참여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으로서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성이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산림녹지과(전화: 880-2475)로 문의바랍니다.

붙임1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앞면)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0.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자의 문자 발송			동의() 미동의()	
이 력 사 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업 기간	20 . . . ~ 20 . . .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경력(), 기타()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① 본 신청서는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 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서식 2 표준근로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2. 근무장소 :
- 3. 업무의 내용 :
- 4. 소정근로시간 : __시__분부터 __시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5. 근무일 및 휴일
 - 근무일 : 매주 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 유급휴일 : 주휴일 매주 __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 원
 - 상여금 : 있음 () _____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_____ 원, _____ 원
 - _____ 원, _____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10. 기 타
 - 사업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정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이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자를 선발하므로

다음연도 근로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임

- 위에 게시된 내용 외에 사업내용 등 근로에 관한 세부 사항은 「2020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2

구직신청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15.>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서(상용)

※ 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1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주소(*) (현거주지)				
	②연락처	전화번호(*) (선택 가능)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받음 []받지 않음		
		전자우편수신 서비스 []받음 []받지 않음			

최종학력 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졸업(예정) []재학 []수료 []휴학 []중퇴 []검정고시

희 망 취업조건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신입 []경력	년 개월		
	2		[]신입 []경력	년 개월		
	3		[]신입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시·도 ()구·군 2순위 ()시·도 ()구·군 [] 재택근무 [] 관계없음			
	고용형태(*) (복수 선택가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파견근로 []시간제 ※ 위의 고용형태를 시간제로 원하는 경우			
	병역특례취업희망		[]현역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전문연구요원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연봉 연 ()만원 이상	[]면접 후 결정 가능			
		[]월급 월 평균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일급 일당 ()원 이상				
		[]시급 시간당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시간, 기숙사·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알선희망정도	[]알선필요(워크넷 공개) []알선 필요하지 않음(워크넷 비공개) ※ “알선 필요하지 않음(워크넷 비공개)”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입사지원 등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선유예기간	()년 ()월 ()일까지 ※ 직업훈련, 기타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당장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을
구직정보 제공 동의 여부	[]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동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공 동의 []지방자치단체 제공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조회 동의 여부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고용보험가입 이력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 알선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붙임3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기준

1. 여성세대주(가장) 여부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4.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실직자 : `20.2.23. 이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폐업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
-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하동군 공고 제2020 - 1517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20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하동읍고전지구-1차, 금남지구-1차, 전도~신월, 국도19호고속도로, 평사봉대리)지구
2. 방제작업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감염우려목 및 기타고사목 제거·방제작업
3. 방제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4. 방제대상지 : 하동읍, 악양면 고전면, 금남면, 진교면
5. 방제내용

사업지구	방제 기간	방제 방법	방제 약제	방제 병해충
금남지구-1차 외 4지구	2020년 10월~12월	벌채, 훈증, 파쇄, 훈증무더기 제거 등	메탐소듐	소나무 재선충병

6. 공고기간 : 2020. 12. 08. ~ 2020. 12. 31. (24일간)
7. 주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으로 인해 재선충병의 확산은 물론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가 되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하동군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방제작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하동군 산림녹지과 산림·공원보호담당(☎055-880-2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07.

하 동 군 수



필지별(공정별)사업내역서(하동읍 고전지구-1차)

구 분		사업대상지		지 번	지 적 (㎡)	피 해 면 적 (㎡)	훈 증 (EA)	위험 목 (훈 증) (EA)	인력 집재 (EA)	위험 목 인력 집재 (EA)	위험 목 제거 (EA)	산지 집재 (EA)	소군 락 모두 베기 (EA)	합계
임반	소반	군· 면	리· 동											
1	1	고전	신월	1464-5 구					1.0					1.0
1	1	고전	신월	166답					1.0					1.0
1	1	고전	신월	313-2대					1.0					1.0
1	1	고전	신월	315-1도						1.0				1.0
1	1	고전	신월	317도					1.0					1.0
1	1	고전	신월	91-1 도					1.0					1.0
1	1	고전	신월	산163임						1.0				1.0
1	1	고전	신월	산171임					1.0	1.0				2.0
1	1	고전	신월	산172임						1.0				1.0
1	1	고전	신월	산173임					2.0					2.0
1	1	고전	신월	산178임					1.0					1.0
1	1	고전	신월	산181임					1.0					1.0
1	1	고전	전도	1295도					1.0					1.0
1	1	고전	전도	143임					1.0					1.0
1	1	고전	전도	313 대					2.0					2.0
1	1	고전	전도	347전						2.0				2.0
1	1	고전	전도	350-1답					1.0					1.0
1	1	고전	전도	393-1임			6.0							6.0
1	1	고전	전도	436전			1.0							1.0
1	1	고전	전도	산21임			2.0		1.0					3.0
1	1	고전	전도	산26임					1.0					1.0
1	1	고전	전도	산39-1임					6.0	2.0				8.0
1	1	고전	전도	산42임					1.0	1.0				2.0
1	1	고전	전도	산44-11 임					1.0	2.0				3.0
1	1	고전	전도	산44-2임			1.0		4.0	2.0				7.0
1	1	고전	전도	산44-4임					15.0	1.0				16.0
1	1	고전	전도	산44-6도					2.0	1.0				3.0
1	1	고전	전도	산48임			1.0							1.0
1	1	고전	전도	산49임			1.0							1.0
1	1	고전	전도	산72임			4.0							4.0
합		계		58			16		46	15				77

필지별(공정별)사업 내역서(금남지구-1차)

구 분		사업대상지		지 번	지적 (㎡)	피해 면적 (㎡)	훈증 (EA)	위험 목 (훈증) (EA)	인력 집재 (EA)	위험 목 인력 집재 (EA)	위험 목 제거 (EA)	산지 집재 (EA)	소군 락 모두 베기 (EA)	합계
임 반	소 반	군· 면	리· 동											
1	1	금남	노량	740-2임					4.0	3.0				7.0
1	1	금남	노량	763묘						1.0				1.0
1	1	금남	노량	산117-1임					1.0	1.0				2.0
1	1	금남	노량	산109-25 도					2.0					2.0
1	1	금남	송문	산136-1 임					2.0					2.0
1	1	금남	송문	산141-5임					1.0					1.0
1	1	금남	송문	산88-8임					1.0					1.0
1	1	금남	송문	산84-11 임					2.0					2.0
1	1	금남	진정	산67-29 임			2.0		1.0					3.0
1	1	금남	진정	산69-1임					1.0					1.0
1	1	금남	진정	산67-16 임			1.0							1.0
1	1	금남	진정	산67-17 임			1.0							1.0
1	1	금남	계천	산33-2도					3.0					3.0
1	1	금남	덕천	1011-1 도										
1	1	금남	덕천	1008-3도										
1	1	금남	덕천	산143-13임			1.0							1.0
1	1	금남	대송	산53-6 임			3.0							3.0
1	1	금남	대송	산53-7 임			1.0							1.0
1	1	금남	대송	산50-4도			1.0		1.0					2.0
1	1	금남	진정	1123도										
1	1	금남	진정	산21-1임					1.0					1.0
1	1	금남	덕천	산144-10 구			1.0							1.0
1	1	금남	송문	산6-1임			4.0							4.0
1	1	금남	송문	산6-6임					1.0					1.0
1	1	금남	송문	산5-1임					1.0					1.0
1	1	금남	송문	산91-4임			1.0		5.0					6.0
1	1	금남	송문	산91-17임			1.0							1.0
1	1	금남	송문	산149-5도										
1	1	금남	송문	산149-1 임					3.0					3.0
1	1	금남	송문	산12임			1.0							1.0
1	1	금남	송문	산11임										
1	1	금남	송문	155전										
1	1	금남	송문	산119-1임					1.0					1.0
1	1	금남	노량	617-2도					2.0					2.0
1	1	금남	노량	산125-4 도					1.0					1.0
1	1	금남	송문	산191 임					2.0					2.0
1	1	금남	송문	산189-8 임					2.0					2.0
1	1	금남	계천	산48임			9.0		1.0					10.0
1	1	금남	계천	산48-2 임			2.0							2.0
1	1	금남	계천	산48-4 임					1.0					1.0

1	1	금남	진정	산71-7임			3.0						3.0
1	1	금남	진정	산72-15 임					2.0				2.0
1	1	금남	덕천	산111-3도					1.0				1.0
1	1	금남	덕천	산113-6임			1.0						1.0
1	1	금남	진정	산47-1임					3.0				3.0
1	1	금남	진정	산50-1임					5.0				5.0
1	1	금남	진정	산50-13 임					1.0				1.0
1	1	금남	진정	산50-10임					3.0				3.0
1	1	금남	진정	산51-2임					4.0				4.0
1	1	금남	진정	산50-11임					3.0				3.0
1	1	금남	덕천	1402-3도					1.0				1.0
1	1	금남	대송	837-1 잡			1.0						1.0
1	1	금남	대송	산68-22임			4.0						4.0
1	1	금남	대송	산69-1임			1.0						1.0
합 계				54			39		63	5			107

필지별(공정별)사업내역서(전도~신월지구)

구 분		사업대상지		지 번	지적 (㎡)	피해 면적 (㎡)	훈증 (EA)	위험 목 (훈증) (EA)	인력 집재 (EA)	위험 목 인력 집재 (EA)	위험 목 제거 (EA)	산지 집재 (EA)	소군 락 모두 베기 (EA)	합계
임 반	소 반	군· 면	리· 동											
1	1	고전	대덕	494-1						1.0				1.0
1	1	고전	대덕	494-2					1.0					1.0
1	1	고전	신월	154			1.0							1.0
1	1	고전	신월	169			1.0							1.0
1	1	고전	신월	173			1.0							1.0
1	1	고전	신월	187				1.0						1.0
1	1	고전	신월	225					1.0					1.0
1	1	고전	신월	367					3.0					3.0
1	1	고전	신월	1220					1.0					1.0
1	1	고전	신월	33239			1.0							1.0
1	1	고전	신월	1232-1					1.0					1.0
1	1	고전	신월	1233-3					1.0					1.0
1	1	고전	신월	1464-1					2.0					2.0
1	1	고전	신월	163-1					1.0					1.0
1	1	고전	신월	315-2					1.0					1.0
1	1	고전	신월	409-2			1.0							1.0
1	1	고전	신월	산 123-1			1.0		3.0					4.0
1	1	고전	신월	산 123-3					4.0					4.0
1	1	고전	신월	산 125					2.0					2.0
1	1	고전	신월	산 126-1			14.0		2.0	2.0				18.0
1	1	고전	신월	산 127					1.0					1.0
1	1	고전	신월	산 128-1			12.0		3.0					15.0
1	1	고전	신월	산 129			6.0							6.0
1	1	고전	신월	산 132-3					1.0					1.0
1	1	고전	신월	산 133-1					1.0					1.0
1	1	고전	신월	산 152			7.0							7.0
1	1	고전	신월	산 156-1			5.0							5.0
1	1	고전	신월	산 162-1			16.0		9.0					25.0
1	1	고전	신월	산 167-1			13.0							13.0
1	1	고전	신월	산 168			8.0							8.0
1	1	고전	신월	산 170			1.0		1.0					2.0
1	1	고전	신월	산 170-1			1.0							1.0
1	1	고전	신월	산 171			2.0							2.0
1	1	고전	신월	산 172			1.0			1.0				2.0
1	1	고전	신월	산 173			9.0		4.0					13.0
1	1	고전	신월	산 178			11.0		3.0					14.0
1	1	고전	신월	산 179			1.0							1.0
1	1	고전	신월	산 180-1			1.0							1.0
1	1	고전	신월	산 181			2.0							2.0

1	1	고전	신월	산 183		3.0						3.0
1	1	고전	신월	산 184		22.0						22.0
1	1	고전	신월	산 191		2.0						2.0
1	1	고전	신월	산 192		4.0						4.0
1	1	고전	신월	산 193-4		4.0						4.0
1	1	고전	신월	산 195-1		3.0						3.0
1	1	고전	신월	산 195-8		1.0						1.0
1	1	고전	신월	산 197		1.0						1.0
1	1	고전	신월	산 198-2		5.0		2.0				7.0
1	1	고전	신월	산 199-1		15.0						15.0
1	1	고전	신월	산 199-28		7.0						7.0
1	1	고전	신월	산 199-34		1.0						1.0
1	1	고전	신월	산 201-6		2.0						2.0
1	1	고전	신월	산 203-5		2.0						2.0
1	1	고전	전도	1		2.0						2.0
1	1	고전	전도	152		1.0						1.0
1	1	고전	전도	156				1.0				1.0
1	1	고전	전도	175		1.0						1.0
1	1	고전	전도	450		1.0						1.0
1	1	고전	전도	537		1.0						1.0
1	1	고전	전도	791		1.0						1.0
1	1	고전	전도	792		14.0						14.0
1	1	고전	전도	800		7.0						7.0
1	1	고전	전도	849		1.0						1.0
1	1	고전	전도	852		1.0						1.0
1	1	고전	전도	860				1.0	1.0			2.0
1	1	고전	전도	862				1.0				1.0
1	1	고전	전도	863				3.0				3.0
1	1	고전	전도	947				2.0				2.0
1	1	고전	전도	1025				1.0				1.0
1	1	고전	전도	1073		1.0						1.0
1	1	고전	전도	1074		2.0						2.0
1	1	고전	전도	1162		3.0						3.0
1	1	고전	전도	1163		2.0						2.0
1	1	고전	전도	1164		3.0						3.0
1	1	고전	전도	1214		1.0						1.0
1	1	고전	전도	1217				1.0				1.0
1	1	고전	전도	1234				1.0				1.0
1	1	고전	전도	1236				2.0				2.0
1	1	고전	전도	1252		1.0						1.0
1	1	고전	전도	1004-1					1.0			1.0
1	1	고전	전도	1030-1		1.0						1.0
1	1	고전	전도	1040-1			1.0	2.0				3.0
1	1	고전	전도	1040-2		2.0						2.0
1	1	고전	전도	1042-2				1.0				1.0
1	1	고전	전도	1064-2		1.0						1.0
1	1	고전	전도	240-1				5.0				5.0
1	1	고전	전도	240-2				3.0				3.0
1	1	고전	전도	393-1		10.0		7.0				17.0

1	1	고전	전도	498-1			1.0						1.0
1	1	고전	전도	609-1			1.0						1.0
1	1	고전	전도	798-23			3.0		2.0	1.0			6.0
1	1	고전	전도	798-7			1.0						1.0
1	1	고전	전도	산 1						2.0			2.0
1	1	고전	전도	산 113			9.0						9.0
1	1	고전	전도	산 114			5.0						5.0
1	1	고전	전도	산 119			22.0						22.0
1	1	고전	전도	산 120			3.0						3.0
1	1	고전	전도	산 121			11.0						11.0
1	1	고전	전도	산 122			14.0						14.0
1	1	고전	전도	산 123			9.0						9.0
1	1	고전	전도	산 126			1.0						1.0
1	1	고전	전도	산 128			6.0		7.0				13.0
1	1	고전	전도	산 128-4					1.0				1.0
1	1	고전	전도	산 129			28.0		1.0				29.0
1	1	고전	전도	산 130			1.0						1.0
1	1	고전	전도	산 131-1			10.0						10.0
1	1	고전	전도	산 132			27.0		1.0				28.0
1	1	고전	전도	산 135					1.0				1.0
1	1	고전	전도	산 136					3.0				3.0
1	1	고전	전도	산 137-3						1.0			1.0
1	1	고전	전도	산 142-1			2.0		3.0				5.0
1	1	고전	전도	산 143			14.0						14.0
1	1	고전	전도	산 144			32.0		1.0				33.0
1	1	고전	전도	산 145-1						1.0			1.0
1	1	고전	전도	산 146-1					7.0				7.0
1	1	고전	전도	산 147					3.0				3.0
1	1	고전	전도	산 148			2.0	3.0	1.0				6.0
1	1	고전	전도	산 148-1			8.0						8.0
1	1	고전	전도	산 148-3					1.0				1.0
1	1	고전	전도	산 15			2.0						2.0
1	1	고전	전도	산 154						1.0			1.0
1	1	고전	전도	산 155			6.0						6.0
1	1	고전	전도	산 156			2.0						2.0
1	1	고전	전도	산 19-1			6.0						6.0
1	1	고전	전도	산 20			6.0						6.0
1	1	고전	전도	산 21			2.0						2.0
1	1	고전	전도	산 2-1			1.0						1.0
1	1	고전	전도	산 22			2.0						2.0
1	1	고전	전도	산 2-2					1.0				1.0
1	1	고전	전도	산 3			10.0		2.0				12.0
1	1	고전	전도	산 39-1			5.0		6.0				11.0
1	1	고전	전도	산 39-14					9.0				9.0
1	1	고전	전도	산 4			3.0						3.0
1	1	고전	전도	산 41					1.0				1.0
1	1	고전	전도	산 4-1			12.0						12.0
1	1	고전	전도	산 42			1.0		1.0				2.0
1	1	고전	전도	산 43			3.0						3.0

1	1	고전	전도	산 44-1		2.0					2.0
1	1	고전	전도	산 44-11				1.0			1.0
1	1	고전	전도	산 44-12		2.0					2.0
1	1	고전	전도	산 44-13		1.0					1.0
1	1	고전	전도	산 44-2		1.0		1.0			2.0
1	1	고전	전도	산 44-4		4.0		10.0			14.0
1	1	고전	전도	산 46-1		3.0					3.0
1	1	고전	전도	산 47		2.0		1.0			3.0
1	1	고전	전도	산 4-8		4.0					4.0
1	1	고전	전도	산 49				1.0			1.0
1	1	고전	전도	산 4-9		1.0					1.0
1	1	고전	전도	산 51		1.0					1.0
1	1	고전	전도	산 52		1.0					1.0
1	1	고전	전도	산 5-2		7.0					7.0
1	1	고전	전도	산 53		4.0					4.0
1	1	고전	전도	산 54		5.0					5.0
1	1	고전	전도	산 56		15.0					15.0
1	1	고전	전도	산 58		1.0					1.0
1	1	고전	전도	산 59		23.0					23.0
1	1	고전	전도	산 6		2.0					2.0
1	1	고전	전도	산 61		1.0					1.0
1	1	고전	전도	산 67		6.0					6.0
1	1	고전	전도	산 68-1		8.0					8.0
1	1	고전	전도	산 7		1.0					1.0
1	1	고전	전도	산 71-1		3.0					3.0
1	1	고전	전도	산 71-2		1.0					1.0
1	1	고전	전도	산 71-3		1.0					1.0
1	1	고전	전도	산 71-4		1.0					1.0
1	1	고전	전도	산 71-5		7.0					7.0
1	1	고전	전도	산 71-7		22.0					22.0
1	1	고전	전도	산 71-8		1.0					1.0
1	1	고전	전도	산 71-9		1.0					1.0
1	1	고전	전도	산 72		3.0					3.0
1	1	고전	전도	산 73-1		2.0		1.0			3.0
1	1	고전	전도	산 74		21.0	1.0	3.0	1.0		26.0
1	1	고전	전도	산 76-1		13.0		1.0			14.0
1	1	고전	전도	산 76-3				4.0			4.0
1	1	고전	전도	산 76-4				2.0			2.0
1	1	고전	전도	산 81-1		2.0					2.0
1	1	고전	전도	산 81-3		6.0					6.0
1	1	고전	전도	산 81-6				1.0			1.0
1	1	고전	전도	산 84-1		22.0					22.0
1	1	고전	전도	산 87		2.0					2.0
1	1	고전	전도	산 89		11.0					11.0
1	1	고전	전도	산 9		4.0					4.0
1	1	고전	전도	산 93-2		1.0					1.0
합 계				70		219	1	57	5		911

필지별(공정별)사업내역서(국도19, 고속도로지구)

구 분		사업대상지		지 번	지 적 (m ²)	피 해 면 적 (m ²)	훈 증 (EA)	위 험 목 (훈 증) (EA)	인 력 집 재 (EA)	위 험 목 인 력 집 재 (EA)	위 험 목 제 거 (EA)	산 지 집 재 (EA)	소 군 락 모 두 배 기 (E A)	합 계
임 반	소 반	군·면	리·동											
1	1	진교	백련	산81-10			3.0							3.0
1	1	진교	백련	산76-1			2.0							2.0
1	1	진교	백련	산81-16			2.0							2.0
1	1	진교	백련	산81-12			3.0							3.0
1	1	진교	백련	산81-4			6.0							6.0
1	1	진교	백련	산83			1.0							1.0
1	1	진교	백련	산81-7			1.0							1.0
1	1	진교	백련	산34-5			1.0							1.0
1	1	진교	백련	산81-10			3.0							3.0
1	1	진교	백련	산81-14			3.0							3.0
1	1	진교	백련	802					1.0					1.0
1	1	진교	백련	산34-3			2.0							2.0
1	1	진교	백련	산80-9			1.0							1.0
1	1	금남	계천	197-4			1.0							1.0
1	1	금남	계천	197-22			1.0							1.0
1	1	금남	계천	197-6					1.0					1.0
1	1	진교	백련	산79-2			2.0							2.0
1	1	진교	백련	산39-12					1.0					1.0
1	1	진교	백련	산79-4			1.0							1.0
1	1	진교	백련	산79-7					1.0					1.0
1	1	진교	백련	산37-3			7.0							7.0
1	1	진교	백련	산39			2.0							2.0
1	1	고전	고하	산179-14			1.0							1.0
1	1	진교	백련	347-3			1.0							1.0
1	1	고전	고하	산179-15			1.0							1.0
1	1	진교	백련	산39-16			1.0							1.0
1	1	진교	백련	343			1.0							1.0
1	1	고전	대덕	산8-1			16.0							16.0
1	1	고전	고하	산183			12.0		14.0					26.0
1	1	고전	대덕	산3			12.0							12.0
1	1	진교	백련	산37-1			1.0							1.0
1	1	고전	고하	산181			17.0		1.0					18.0
1	1	진교	백련	산32-1			6.0							6.0
1	1	진교	백련	산34-4			3.0							3.0
1	1	고전	대덕	산6			2.0							2.0

1	1	진교	백련	산28-5		1.0				1.0
1	1	고전	대덕	산5		13.0				13.0
1	1	고전	고하	764			1.0			1.0
1	1	고전	고하	산184-5		1.0	1.0			2.0
1	1	진교	백련	산28-7		4.0				4.0
1	1	진교	관곡	산119-1		24.0				24.0
1	1	진교	관곡	산117-1		4.0				4.0
1	1	진교	관곡	산120		3.0				3.0
1	1	진교	관곡	산117		1.0				1.0
1	1	금남	덕천	산74-1		19.0				19.0
1	1	진교	관곡	824-1		1.0				1.0
1	1	진교	관곡	산118-5		7.0				7.0
1	1	진교	관곡	산118-6			1.0			1.0
1	1	금남	덕천	산98-1		4.0				4.0
1	1	고전	성평	산110-1			1.0			1.0
1	1	진교	관곡	산121-2		2.0				2.0
1	1	진교	관곡	산119		3.0				3.0
1	1	금남	계천	산3-1		6.0				6.0
1	1	금남	덕천	산96-4		4.0				4.0
1	1	금남	덕천	산96-11		2.0				2.0
1	1	금남	덕천	274		6.0				6.0
1	1	금남	덕천	산74-5		1.0				1.0
1	1	진교	관곡	산126-9			1.0			1.0
1	1	금남	계천	741-10			1.0			1.0
1	1	금남	덕천	산97		1.0				1.0
1	1	금남	계천	산12-3		1.0	3.0			4.0
1	1	금남	덕천	산84-3		7.0				7.0
1	1	금남	덕천	산84-4		7.0				7.0
1	1	진교	송원	산78		1.0				1.0
1	1	금남	덕천	산98-2		10.0	3.0			13.0
1	1	금남	덕천	산84-7		2.0				2.0
1	1	금남	덕천	204		3.0				3.0
1	1	금남	덕천	산83-6		1.0				1.0
1	1	진교	송원	산96-13		2.0				2.0
1	1	진교	송원	산93		2.0				2.0
1	1	금남	덕천	산99		1.0	2.0			3.0
1	1	금남	덕천	산74-4		1.0				1.0
1	1	진교	관곡	28-2		1.0				1.0
1	1	진교	관곡	산104		1.0				1.0
1	1	금남	덕천	1463		1.0				1.0
1	1	금남	덕천	242		2.0				2.0
1	1	진교	관곡	산104-1		1.0				1.0
1	1	금남	덕천	산73-1		1.0				1.0
1	1	금남	덕천	산74-8		1.0				1.0
1	1	금남	덕천	361-1			1.0			1.0
1	1	금남	덕천	산84-18		1.0				1.0
1	1	금남	덕천	산84-9		5.0				5.0
1	1	금남	덕천	산84-17		11.0				11.0
1	1	금남	덕천	206		1.0				1.0

1	1	고전	성평	산85			3.0					3.0
1	1	금남	덕천	산90			7.0					7.0
1	1	금남	덕천	산84-8			1.0					1.0
1	1	진교	송원	289-2			1.0					1.0
1	1	금남	덕천	산90-6			2.0					2.0
1	1	진교	고이	산103-1			1.0					1.0
1	1	고전	성평	산31-1			6.0					6.0
1	1	진교	고이	산56-4					1.0			1.0
1	1	진교	고이	259-1			1.0					1.0
1	1	진교	고이	산52			1.0					1.0
1	1	고전	성평	산22-4			2.0					2.0
1	1	고전	성평	산22-1			10.0					10.0
1	1	고전	성평	산22-3			3.0					3.0
1	1	진교	고이	287-4			1.0					1.0
1	1	진교	고이	287-1			2.0					2.0
1	1	고전	명교	산22			14.0					14.0
1	1	고전	성평	산17-1			1.0					1.0
1	1	고전	성평	산23-1			1.0					1.0
1	1	고전	명교	산12-20			5.0					5.0
1	1	고전	명교	산12-14			1.0					1.0
1	1	고전	명교	산12-2			2.0					2.0
1	1	진교	백련	산114-2			1.0					1.0
1	1	진교	백련	산114-1			1.0					1.0
1	1	진교	송원	537			1.0					1.0
1	1	진교	송원	산108			1.0					1.0
1	1	진교	백련	649			4.0					4.0
1	1	진교	관곡	2-1			1.0					1.0
1	1	진교	관곡	2-2			1.0					1.0
1	1	진교	백련	산98-2					1.0			1.0
1	1	진교	관곡	산107-6					1.0			1.0
1	1	금남	노량	산120-1			1.0					1.0
1	1	금남	노량	627-3			1.0					1.0
1	1	금남	송문	산110-1			10.0					10.0
1	1	금남	노량	산125-1			2.0					2.0
				산117-1			5.0		1.0			6.0
1	1	금남	노량	산125-6			3.0					3.0
1	1	금남	노량	668-8			1.0					1.0
1	1	금남	송문	산117-1			1.0					1.0
1	1	금남	송문	산37			1.0					1.0
1	1	금남	송문	산116-2			8.0					8.0
1	1	금남	노량	산124-2					2.0			2.0
1	1	금남	노량	26			1.0					1.0
1	1	금남	송문	산11			23.0					23.0
1	1	금남	송문	산125-4					3.0			3.0
1	1	금남	노량	617					1.0			1.0
1	1	금남	노량	617-2					4.0			4.0
1	1	금남	노량	산117-7			1.0					1.0
1	1	금남	노량	산140-1					1.0			1.0
1	1	금남	노량	산28-1			30.0					30.0

1	1	금남	송문	산100			3.0		4.0			7.0
1	1	금남	노량	산104-3					4.0			4.0
1	1	금남	대송	산104-9					3.0			3.0
1	1	금남	대송	산63-1			36.0					36.0
1	1	금남	진정	102-9					1.0			1.0
1	1	금남	송문	산104-13					1.0			1.0
1	1	금남	대송	산104-5					2.0			2.0
1	1	금남	대송	산104-10					1.0			1.0
1	1	금남	대송	570-1			4.0					4.0
1	1	금남	노량	565			1.0					1.0
1	1	금남	노량	산113-1			7.0					7.0
1	1	금남	대송	산104-4			1.0					1.0
1	1	금남	대송	568			1.0					1.0
1	1	금남	노량	산104-2			6.0					6.0
1	1	금남	대송	산101-4			4.0					4.0
1	1	금남	노량	산113-31			8.0					8.0
1	1	금남	대송	산104-1			1.0					1.0
1	1	금남	대송	산113-32			3.0					3.0
1	1	금남	대송	산26-1			1.0					1.0
1	1	금남	송문	산113-33			1.0					1.0
1	1	금남	대송	719-1			2.0					2.0
1	1	금남	진정	720			2.0					2.0
1	1	금남	진정	719			1.0					1.0
1	1	금남	진정	553-1					1.0			1.0
1	1	금남	노량	721			2.0					2.0
1	1	금남	진정	1144			1.0					1.0
1	1	금남	진정	산111-1					1.0			1.0
1	1	금남	덕천	산120-8			1.0					1.0
1	1	금남	대송	727			1.0					1.0
1	1	금남	진정	산74-5					1.0			1.0
1	1	금남	진정	산74-1					1.0			1.0
1	1	금남	진정	산24			5.0					5.0
1	1	금남	대송	산69-8			39.0					39.0
1	1	금남	대송	산62-1			1.0					1.0
1	1	금남	진정	613			1.0					1.0
1	1	금남	송문	산62-2			1.0					1.0
1	1	금남	진정	산132-1					1.0			1.0
1	1	금남	송문	산69-1			2.0					2.0
1	1	금남	대송	산62-8			1.0					1.0
1	1	금남	진정	산134-6					3.0			3.0
1	1	금남	송문	산62-18			1.0					1.0
1	1	금남	진정	산135					1.0			1.0
1	1	금남	송문	산5-2			2.0					2.0
1	1	금남	진정	산62-9			9.0					9.0
1	1	금남	진정	산59-18			1.0					1.0
1	1	금남	진정	727-4					1.0			1.0
1	1	금남	노량	산84-11					2.0			2.0
1	1	금남	송문	산84-15					2.0			2.0
1	1	금남	송문	산69-2			7.0					7.0

1	1	금남	대송	산71-7			2.0					2.0
1	1	금남	진정	산66-12			10.0					10.0
1	1	금남	대송	744-1			1.0					1.0
1	1	금남	진정	740-2					4.0			4.0
1	1	금남	노량	산66-3			5.0					5.0
1	1	금남	대송	산40-8					2.0			2.0
1	1	금남	계천	산72-19					3.0			3.0
1	1	금남	진정	산66-17			2.0					2.0
1	1	금남	대송	산119-1					1.0			1.0
1	1	금남	송문	산90-16			4.0		2.0			6.0
1	1	금남	송문	산42-1					5.0			5.0
1	1	금남	계천	산149-1					1.0			1.0
1	1	금남	송문	산67-17			2.0					2.0
1	1	금남	진정	766			1.0					1.0
1	1	금남	대송	산67-12			2.0					2.0
1	1	금남	진정	산66-1			2.0					2.0
1	1	금남	대송	316-3			1.0					1.0
1	1	금남	송문	산67-20			1.0					1.0
1	1	금남	진정	856-8			2.0					2.0
1	1	금남	대송	산93-1			40.0					40.0
1	1	금남	송문	산94			6.0					6.0
1	1	금남	송문	582					1.0			1.0
1	1	금남	송문	315-5					1.0			1.0
1	1	금남	송문	산66-23			1.0					1.0
1	1	금남	대송	산67-26			4.0					4.0
1	1	금남	진정	산65-1			1.0					1.0
1	1	금남	대송	산152-10					2.0			2.0
1	1	금남	송문	산7-67			1.0					1.0
1	1	금남	계천	31			2.0					2.0
1	1	금남	계천	351-2					1.0			1.0
1	1	금남	계천	837					1.0			1.0
1	1	금남	송문	815-1			2.0					2.0
1	1	금남	대송	산67-30			3.0					3.0
1	1	금남	진정	334					2.0			2.0
1	1	금남	계천	351-1					1.0			1.0
1	1	금남	계천	산67-31			2.0					2.0
1	1	금남	진정	산22			1.0		1.0			2.0
1	1	금남	진정	산53-6			2.0					2.0
1	1	금남	대송	산53-7			1.0					1.0
1	1	금남	대송	산47-1			2.0					2.0
1	1	금남	대송	산67-29			2.0					2.0
1	1	금남	진정	산6-1			1.0					1.0
1	1	금남	송문	612-5			4.0					4.0
1	1	금남	송문	산95			1.0					1.0
1	1	금남	송문	산48-4			2.0					2.0
1	1	금남	계천	산8-12			2.0		1.0			3.0
1	1	금남	송문	산48			9.0					9.0
1	1	금남	계천	산8-1			1.0					1.0
1	1	금남	송문	산146-8					1.0			1.0

1	1	금남	송문	산48-2		5.0					5.0
1	1	금남	계천	산50-8				1.0			1.0
1	1	금남	대송	산30-1		23.0					23.0
1	1	금남	계천	산23-3				3.0			3.0
1	1	금남	진정	산141-6				3.0			3.0
1	1	금남	덕천	621-6				1.0			1.0
1	1	금남	진정	산19-13				4.0			4.0
1	1	금남	진정	산19-12				2.0			2.0
1	1	금남	진정	산19-11				3.0			3.0
1	1	금남	진정	산140-1		6.0					6.0
1	1	금남	덕천	산10		1.0					1.0
1	1	금남	송문	산28-11		5.0					5.0
1	1	금남	진정	388		3.0					3.0
1	1	금남	계천	산136-1		2.0					2.0
1	1	금남	덕천	산80		4.0					4.0
1	1	금남	송문	산33-1		2.0					2.0
1	1	금남	계천	산77		1.0					1.0
1	1	금남	송문	산144				3.0			3.0
1	1	금남	덕천	산33-2		1.0					1.0
1	1	금남	계천	산146-7				3.0			3.0
1	1	금남	덕천	산32-1		1.0					1.0
1	1	금남	계천	19725		1.0					1.0
1	1	금남	계천	산56		26.0					26.0
1	1	하동	화심	산59		6.0					6.0
1	1	하동	두곡	산61		9.0					9.0
1	1	하동	두곡	산49		18.0					18.0
1	1	하동	두곡	산93				2.0			2.0
1	1	하동	두곡	1058-12		1.0					1.0
1	1	하동	화심	1058-4		7.0					7.0
1	1	하동	화심	산5-1		18.0					18.0
1	1	하동	두곡	1058-3		2.0					2.0
1	1	하동	화심	산10-4		27.0		1.0			28.0
1	1	하동	두곡	산36		7.0					7.0
1	1	하동	읍내	산33-1		19.0					19.0
1	1	하동	읍내	산53		1.0					1.0
1	1	하동	화심	산32		2.0					2.0
1	1	하동	읍내	산30-1		2.0					2.0
1	1	하동	비파	산103-5				6.0			6.0
1	1	하동	화심	652				2.0			2.0
1	1	하동	두곡	산62-1		9.0					9.0
1	1	하동	두곡	산10-3		19.0					19.0
1	1	하동	두곡	334		1.0					1.0
1	1	하동	화심	산45-1		1.0					1.0
1	1	하동	읍내	638				1.0			1.0
1	1	하동	읍내	822		1.0					1.0
1	1	하동	두곡	산11		3.0					3.0
1	1	하동	읍내	산17		1.0					1.0
1	1	하동	읍내	산60		1.0					1.0
1	1	하동	두곡	산15-1		6.0					6.0

1	1	하동	읍내	825			2.0					2.0
1	1	하동	두곡	산57			3.0					3.0
1	1	하동	화심	475			1.0					1.0
1	1	하동	두곡	산50-1			1.0					1.0
1	1	하동	두곡	산14-1			2.0					2.0
1	1	하동	읍내	273			2.0					2.0
1	1	하동	두곡	산64-7			1.0					1.0
1	1	하동	두곡	산96			1.0					1.0
1	1	하동	두곡	산47			1.0					1.0
1	1	하동	두곡	산2			1.0					1.0
1	1	하동	두곡	산21-1			5.0					5.0
1	1	하동	비파	산29-1			1.0					1.0
1	1	하동	비파	산28-1			1.0					1.0
1	1	하동	비파	산38			1.0					1.0
1	1	하동	읍내	521-1			1.0					1.0
1	1	하동	읍내	510-1					1.0			1.0
1	1	하동	두곡	산10-1			1.0					1.0
1	1	하동	읍내	산15-2			2.0					2.0
1	1	하동	읍내	산33			1.0					1.0
1	1	하동	읍내	산29-2			1.0					1.0
1	1	하동	비파	1061-1					3.0			3.0
1	1	하동	두곡	산20-5			1.0					1.0
1	1	하동	비파	산2-1			1.0					1.0
1	1	하동	비파	산16-1					1.0			1.0
1	1	하동	두곡	산4-8			1.0					1.0
1	1	하동	읍내	산74					1.0			1.0
합 계				34			1006		150			1156

필지별(공정별)사업내역서(평사, 봉대리지구)

구 분		사업대상지		지 번	지 적 (m ²)	피해 면적 (m ²)	훈증 (EA)	위험 목 (훈 증) (EA)	인력 집재 (EA)	위험 목 인력 집재 (EA)	위험 목 제거 (EA)	산지 집재 (EA)	소군 락 모두 베기 (EA)	합계
임 반	소 반	군· 면	리· 동											
1	1	악양	봉대	176			1.0							1.0
1	1	악양	봉대	177			1.0							1.0
1	1	악양	봉대	188			1.0							1.0
1	1	악양	봉대	221			1.0							1.0
1	1	악양	봉대	223			1.0							1.0
1	1	악양	봉대	260			4.0							4.0
1	1	악양	봉대	304			3.0							3.0
1	1	악양	봉대	314			4.0							4.0
1	1	악양	봉대	316			1.0							1.0
1	1	악양	봉대	26-1					1.0					1.0
1	1	악양	봉대	180-8					1.0					1.0
1	1	악양	봉대	344-1					1.0					1.0
1	1	악양	봉대	347-2			1.0							1.0
1	1	악양	봉대	산 3-11					1.0					1.0
1	1	악양	봉대	산 3-4			36.0		5.0					41.0
1	1	악양	봉대	산 3-6			1.0							1.0
1	1	악양	봉대	산 3-7			5.0		7.0					12.0
1	1	악양	봉대	산 6-1			210.0		32.0					242.0
1	1	악양	봉대	산 6-5					1.0					1.0
1	1	악양	봉대	산 6-6					1.0					1.0
1	1	악양	봉대	산 6-7					4.0					4.0
1	1	악양	봉대	산 7			2.0							2.0
1	1	악양	평사	633					1.0					1.0
1	1	악양	평사	644			2.0							2.0
1	1	악양	평사	646			2.0							2.0
1	1	악양	평사	667			2.0							2.0
1	1	악양	평사	670			3.0							3.0
1	1	악양	평사	747			1.0							1.0
1	1	악양	평사	750			1.0							1.0
1	1	악양	평사	755			2.0							2.0
1	1	악양	평사	756			1.0							1.0
1	1	악양	평사	757			1.0							1.0
1	1	악양	평사	759			1.0							1.0
1	1	악양	평사	762-2					1.0					1.0
1	1	악양	평사	820-5					1.0					1.0
1	1	악양	평사	822-6			1.0							1.0
1	1	악양	평사	산 10			1.0							1.0
1	1	악양	평사	산 15			10.0							10.0
1	1	악양	평사	산 15-1			1.0							1.0

1	1	악양	평사	산 16		4.0					4.0
1	1	악양	평사	산 19		2.0					2.0
1	1	악양	평사	산 20		1.0					1.0
1	1	악양	평사	산 23		1.0					1.0
1	1	악양	평사	산 24		5.0					5.0
1	1	악양	평사	산 25		4.0					4.0
1	1	악양	평사	산 26		1.0					1.0
1	1	악양	평사	산 29		5.0					5.0
1	1	악양	평사	산 30-1		2.0					2.0
1	1	악양	평사	산 33		7.0					7.0
1	1	악양	평사	산 33-1		4.0					4.0
1	1	악양	평사	산 34-1		6.0					6.0
1	1	악양	평사	산 34-3		1.0					1.0
1	1	악양	평사	산 35		2.0					2.0
1	1	악양	평사	산 37-1		12.0					12.0
1	1	악양	평사	산 38		21.0					21.0
1	1	악양	평사	산 39-3		1.0					1.0
1	1	악양	평사	산 41		4.0					4.0
1	1	악양	평사	산 42		1.0					1.0
1	1	악양	평사	산 43		1.0					1.0
1	1	악양	평사	산 44-1		1.0					1.0
1	1	악양	평사	산 44-2		1.0					1.0
1	1	악양	평사	산 5		1.0	7.0				8.0
1	1	악양	평사	산 50		1.0					1.0
1	1	악양	평사	산 8		1.0					1.0
1	1	악양	평사	산 9		1.0					1.0
합 계				65		392	64				456

화개면 공고 제2020 - 36호

읍면 책임제 막바지 덩굴류 제거단(2차) 모집 공고

주요도로변 및 생활 가시권 등에 분포하고 있는 덩굴류(취)를 제거를 위한 『읍면 책임제 막바지 덩굴류 제거단(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9일

화 개 면 장

1. 모집인원 : 6명

※ 모집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필요시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인원 초과 시 면접을 통하여 선발

2. 모집방법 : 공개모집

3. 접수기간 : 2020. 12. 09.(수) ~ 12. 15.(화)(9:00 ~ 18:00)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치 않음)

※ 접수기간 종료일 근무시간(18:00) 도착까지 유효함

5. 접수장소 : 화개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6. 작업형태 : 주요 도로변 경사지에서 작업도구를 사용, 칩뿌리 주변의 토사를 최소 깊이 10cm까지 절토하여 칩뿌리를 절단 채취하는 작업

7. 응시자격

- 가. 성 별 : 제한 없음
- 나. 지역조건 : 모집공고일 현재 화개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출
 · 퇴근이 가능한자
- 다.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라.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마.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바. 상시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8. 응시자격의 제한

- 가. 칩 등 덩굴류 제거작업을 위한 작업과 작업도구 사용에 지장이 있는 자
-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9. 제출서류

- 가. 지원서 1부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
- 라. 재산세 등 완납여부 확인(※ 면에서 자체 확인)

10. 채용방법

-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채용인원보
 다 인원이 많은 경우 실시)

11.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12. 15.(화) 19:00 이후 - 개별통지
 - 나. 면접시험(인원초과시) : 2020. 12. 16.(수) 10:00 (장소 : 화개면사무소)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2. 16.(수) - 14:00 이후 개별통지
- ※ 면접시험 시행 시 합격자 발표는 연기될 수 있음.

12. 근로기간 : 2020. 12. 17. ~ 12. 30.

13. 임금 및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 (9:00~18:00)

나.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다. 임 금 : 68,720원 / 1일

라.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마. 1개월간 계속 참여 시 월 1일의 유급휴일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바.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14. 종사업무

가. 주요도로변 가시권 축 등 덩굴류 제거

나. 소공원내 축 등 덩굴류 제거

다. 기타 산림업무

15.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선발된 후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됩니다.

라. 지정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근로자 본인이 해결하여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 화개면 산업경제부서(055-880-6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읍면 책임제 막바지 덩굴류 제거단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 요 이 력 사 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 격 면 허	1.	교 육 이 수			교 육 명		교 육 일 수		비 고			
		2.				1.		주					
		3.				2.		주					
	병 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인)			
	취 업 관 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 중		Kg		교정시력				좌(), 우()
기 타 사 항	주 거 상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 산 상 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경 력 사 항	①												
	②												
	③												
기 타 사 항 기 술 (본인)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붙임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읍면 책임제 막바지 덩굴류 제거단 신청과 관련하여 하동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및 계약 체결, 4대보험의 신고, 임금 등의 산정과 지급, 경력/자격의 조회 및 채용이력관리, 신원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등

□ 수집 ·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메일 등 연락처, 자격사항 등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 · 이용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 이용 됨.
-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미 채용시 파기)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읍면 책임제 막바지 덩굴류 제거단 신청과 관련하여 하동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고용지원센터(워크넷) : 중복 취업여부 확인 등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센터 등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농협 등 금융기관 :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적립
- 경찰서 : 신원조사 등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미 채용시 파기)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화개면사무소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근무기간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부서·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12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